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0호, 2012.1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6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는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12. 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일 이전에 공사비 절감 기여감리원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4.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50</td><td></td></tr>
<tr><td>가.

참
여
감
리
원</td><td>(1) 책임감리원</td><td>[25]</td><td>○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td></tr>
<tr><td></td><td>(가) 해당분야
경력</td><td>15
(13~
11)</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td></tr>
<tr><td></td><td>(나) 직무분야
실적</td><td>9</td><td>○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원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td></tr>
<tr><td></td><td>(다) 교육훈련</td><td>1</td><td>○ 책임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td></tr>
<tr><td></td><td>(라) 면접(발표)</td><td>(2~4)</td><td>○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table>
<tr><th rowspan="2">구문</th><th colspan="3">용역비</th></tr>
<tr><th>20억원 미만</th><th>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th><th>30억원 이상</th></tr>
<tr><td>업무수행능력</td><td>2점</td><td>3점</td><td>4점</td></tr>
</table>
※ 책임감리원 면접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td></tr>
<tr><td></td><td>(2) 보조 감리원</td><td>[15]</td><td></td></tr>
<tr><td></td><td>(가) 해당분야
경력</td><td>9</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td></tr>
<tr><td></td><td>(나) 직무분야
실적</td><td>5</td><td>○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td></tr>
<tr><td></td><td>(다) 교육훈련</td><td>1</td><td>○ 보조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기술지원 감리원	[10]	
	(가) 등급	3	○ 감리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감리전문회사 실적	[10]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감리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산정방법 : 책임, 시공, 검측감리실적 × 1.0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 0.7 ※ 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 부분은 100% 실적 인정
다. 신용도		[15]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	○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3)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참여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tr><td>회사채</td><td>A-이상</td><td>A-미만
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2-이상</td><td>A2-미만
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A-이상</td><td>A-미만
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0</td></tr></table></td></tr>
<tr><td>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td><td>(1) 개발실적</td><td>[10]
3</td><td>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table><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5">가 중 치</td></tr><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able>※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1)개발·활용실적</td><td>[10]
3</td><td>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2014.1.1부터 실용신안에 대한 점수를 폐지하고 특허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은 2014.1.1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있는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과 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
<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1.0점/건당</td></tr>
<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
<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
</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able>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2) 투자실적</td><td>7</td><td>-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10년미만</td><td>10년이상20년미만</td></tr><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table>-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tr><td>구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td></tr><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table>※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td></tr>
<tr><td>마.

업
무
중
첩
도</td><td>(1) 상주감리원</td><td>[5]
3</td><td><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2</td><td>1</td></tr></table>- 다른 공사현장(기술지원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감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이 해당 감리용역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 또한 발주청이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td></tr>
<tr><td></td><td>(2)기술지원 감리원</td><td>2</td><td>○ 기술지원감리원(2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바.

교
체
빈
도</td><td>(1)감리전문회사</td><td>[10]
5</td><td>○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tr><td>교체빈도율
(%)</td><td>5%
미만</td><td>5% 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
이상</td></tr>
<tr><td>점 수</td><td>5</td><td>4.5</td><td>4</td><td>3</td><td>0</td></tr>
</table></td></tr>
<tr><td></td><td>(2) 참여감리원</td><td>5</td><td>○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td></tr>
</table>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세부평가방법</th></tr>
<tr><td>가 점</td><td>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감리원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감리원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table>
<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
<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able>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
*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td></tr>
<tr><td>감점</td><td>부패행위
관련자</td><td>○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 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감리전문회사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감리원,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감리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감리원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영 제104조 별표 7에 따라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1) 상주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분야별 책임자급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술지원감리원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3) 위 호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 등)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과 동일한 분야의 기술지원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이상 중복배치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설공사의 공종 :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말한다.

4)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감리원 중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배점(50점) 범위 안에서 0.5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감리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

용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감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라.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예.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예.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별표2] 제5호.나목을 참조하여 결정

마.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감리원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바.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에 따른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아.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감리업무실적은 해당 감리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공사비가 500억원일 때 2개 감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해당 도로공사 감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10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3.1,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31까지 금액계상[2002. 5. 2.부터 2004.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3. 2, 준공예정일 2005.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2003. 3. 2부터 200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이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 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건설기술을 말한다.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2014. 1. 1일부터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은 법 제18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법 제16조의2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7.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배치 되었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8.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9.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

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10. 발주청은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감리원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감리원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감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나. 감리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나.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라.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감리용역 개요							
1)용역명				2)발주기관 (발 주 청)			
1-1)공사현장 위치							
3)공사개요							
4)감리자 (대표사)	4-1)회 사 명			4-2)대 표 자			
	4-2)등록번호			4-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1 . . . ~ 201 . . .						
7)과업범위	(감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감리원 현황	※ 공사비 절감감리원에 해당되는 감리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 감리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 기여율(%)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보조							
3)기술지원							